

# 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657호 2020. 2. 27.(목)

## 고 시

- 남해군 고시 제2020- 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..... 1
- 남해군 고시 제2020- 29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..... 2
- 남해군 고시 제2020- 30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.. 6

## 공 고

- 남해군 공고 제2020- 260호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(2차) ..... 9
- 남해군 공고 제2020- 264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입법예고 ..... 11
- 남해군 공고 제2020- 266호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6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20-28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18일

남 해 군 수

1. 하 천 명 : 지방하천(무림천)
2. 성 명 : ㈜공진산업개발
3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
4. 점용목적 : 토사야적
5. 점용위치 :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-12, 1103-13번지
6. 점용면적 : 207㎡
7. 점용기간 : 2020. 2. 18. ~ 2021. 2. 17.

남해군 고시 제2020-29호

##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고시

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「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」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18일

남 해 군 수

##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

**제1조(목적)** 남해안을 대표하는 시·군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공동 관광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관광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,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협의회의 명칭은 「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」 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**제3조(구성)** 협의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은 통영시·사천시·거제시·고성군·남해군·하동군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역임하되, 순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  
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  
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특별위원)**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  
② 특별위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**제6조(자문위원)** ①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 
② 자문위원은 관련기관·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  
③ 자문위원에 대한 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7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  
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소속 자치단체의 관광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  
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관광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.  
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의결사항)**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협의회와 공동사업의(남해안 관광개발, 지역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 등) 추진에 관한 사항
- ② 협의회와 공동 관광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
- ③ 협의회와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본 협의회와 발전에 관한 사항

**제9조(의안 및 정족수)** ① 위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.

② 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회의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, 수시 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회의 참석)**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과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**제12조(간사와 서기)**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관광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, 간사를 보좌한다.

**제13조(의결사항 준수)** 협의회 위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경비 부담)**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 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·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사무의 인계)**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규약 개정)**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17조(보칙)**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해군 고시 2020-30호

###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7일

### 남 해 군 수

#### 1.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

○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함.

#### 2.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조서

○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내역 (km<sup>2</sup>)

연번	행정명	변경 전 (2013.12)			변경 후 (2020.2)		
		전체면적	가축사육제한구역		전체면적	가축사육제한구역	
			면적	비율		면적	비율
1	남해읍	27.15	22.80	84.0%	27.03	26.78	99.1%
2	이동면	47.01	21.08	44.8%	46.81	37.54	80.2%
3	상주면	23.79	14.30	60.1%	24.59	23.36	95.0%
4	삼동면	51.20	29.26	57.2%	50.97	49.01	96.1%
5	미조면	15.73	11.74	74.6%	15.70	15.23	97.1%
6	남 면	43.49	26.77	61.6%	43.43	43.38	99.9%
7	서 면	40.96	22.66	55.3%	40.81	37.25	91.3%
8	고현면	28.94	22.53	77.9%	28.81	28.77	99.9%
9	설천면	24.91	18.01	72.3%	24.82	24.81	100.0%
10	창선면	54.35	38.19	70.3%	54.32	53.84	99.1%
합계		357.53	227.35	63.6%	357.29	339.97	95.2%

○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내역

(m<sup>2</sup>)

행정명	전체면적	전부제한구역	일부제한구역			가축사육제한구역	
			주거밀집지역 200m이내	주거밀집지역 500m이내	주거밀집지역 1,500m이내	면적	비율
남해읍	27,032,605	6,311,654	10,374,065	17,918,724	24,985,273	26,778,879	99.1%
이동면	46,813,868	1,268,733	11,392,189	21,087,581	37,536,819	37,536,819	80.2%
상주면	24,587,416	6,077,665	4,617,444	10,492,396	21,482,183	23,358,204	95.0%
삼동면	50,969,562	1,378,535	14,396,883	28,861,946	49,005,580	49,005,580	96.1%
미조면	15,696,431	3,485,155	4,302,489	8,872,121	14,944,896	15,234,548	97.1%
남 면	43,425,074	2,131,980	12,511,182	26,577,449	43,018,015	43,376,386	99.9%
서 면	40,812,421	562,950	9,984,280	22,794,387	37,252,314	37,252,314	91.3%
고현면	28,812,806	3,118,561	10,771,862	21,463,747	28,773,915	28,773,915	99.9%
설천면	24,816,760	590,765	10,150,462	18,325,326	24,814,372	24,814,372	100.0%
창선면	54,320,213	1,791,858	17,983,429	38,584,524	53,843,953	53,843,953	99.1%
합계	357,287,155	26,717,854	106,484,286	214,978,201	335,657,320	339,974,970	95.2%

3.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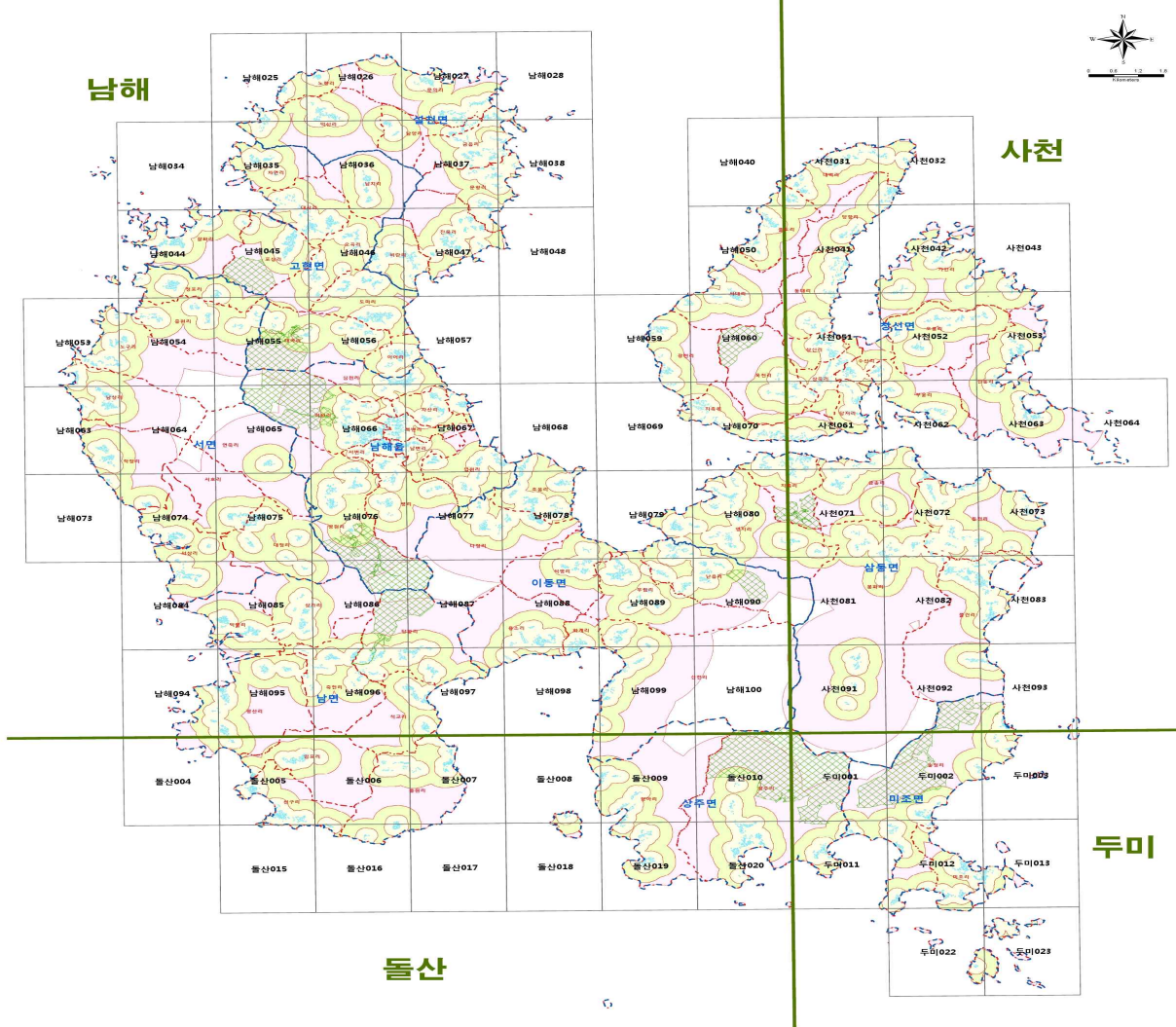
-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 가능.
- 남해군 환경녹지과에 비치 및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 등재.

4. 이해관계인은 남해군 환경녹지과(☎055-860-32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5. 총괄도

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총괄도



**범례**

[Blank Box]	I N D E X	[Blue Dotted Box]	주거밀집지역
[Blue Dashed Box]	읍면경계	[Yellow Box]	주거밀집지역 200m이내 지역
[Red Dashed Box]	리경계	[Light Green Box]	주거밀집지역 500m이내 지역
[Green Cross-hatch Box]	상수원보호구역	[Pink Box]	주거밀집지역 1,500m이내 지역

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20-260호

분묘개장공고(2차)

남해군에서 시행하는 「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」 편입 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,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4일

남 해 군 수

- 1. 분묘소재지 및 기수 : 무연분묘 300기 정도
  - 소재지 :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 206번지 일원  
(무림리 산205, 산206, 산207, 산209-1, 산210, 산217 등 인접 토지)
- 2. 개장사유 :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편입
- 3.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
  - 무연분묘 안치 :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봉안당/봉안 후 10년간 안치
- 4. 공고기간 : 2차 공고일로부터 60일
- 5. 개장방법
  - 유연분묘 :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(이장)처리
  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규정에 따라 공고인 임의 개장
- 6. 공고인 연락처
  - 공고인 :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
  - 연락처 : 055-860-3851(주민복지과 장사행정팀)

7. 신고방법

- 신고(연고자)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서류(제적등본, 족보, 기타 입증서류)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.

8. 기타사항

-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습니다.
-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.

남해군 공고 제2020-264호

##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### 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. 개정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“재정안정화 적립금”이라는 용어를 “재정안정화기금”으로 개정하여 법률용어를 현행화하고,
- 나.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일부 수정하고 기금운용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·투명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적립금의 용어 변경
  - 1) 제명변경 :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  - 2) 재정안정화 적립금 → 재정안정화기금  
(제명 및 각 조명, 본문의 “적립금” → “기금”)
- 나. 기금 재원중 (청사)특별회계 출연금 신설하고 특별회계로 전출 사용할 수 있는 규정(안 제4조 및 안 제6조)
- 다.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액 비율 변경 (50% → 80%)(안 제6조)

라.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8조)

1) 2021년 12월 31일까지→ 2023년 12월 31일까지

4. 개정 조례 안 : 붙임 참조

5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0년 3월 3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1).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
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

2). 연락처 : 전화 055-860-3063, 팩스 055-860-3703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(전화 : 055-860-306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남해군의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경상일반재원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설치)** 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**제4조(기금의 재원)**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
4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

**제5조(기금의 조성)**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: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- 2.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
-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**제6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1. 군의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- 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
- 4.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
- 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- 6.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- ②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「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세출요건이 발생한 경우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3호 및 제5호와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**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- 2.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의 업무는 「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회계공무원)**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
2. 기금출납원 :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해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11조(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남해군 공고 제2020-266호

##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1일

### 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」 폐지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조례 내용의 대부분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,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중복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

-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132, 팩스 055-860-3740  
이메일 pbs7755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정보전산팀(전화 055-860-3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

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